

##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(안 제2조 제3항 신설)
- 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- 다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
  - (1) 입법예고 (2011.07.22~08.11)결과 : 의견없음
  - (2) 규제심사
  - (3) 부패영향평가

##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시”를 “**조례는 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**”로, “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”를 “**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**”로 한다. 제2조의 제목 “(복지기금의 조성)”을 “**(기금의 조성)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노인복지기금 (이하 “복지기금”이라 한다)이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**각 호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충주시”를 “**시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”를 “**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익금 또는 기타”를 “**수익금이나 그 밖의**”로 한다.

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의 제목 “(복지기금의 운영관리)”를 “**(기금의 운영관리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복지기금은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- ③복지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제2항 중 “10인”을 “**10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“**1명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,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,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1인”을 “**1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용관리”를 “**운영관리**”로, “각호”를 “**각 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**그 밖의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**위원회의 사무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직무”를 “**그 직무**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기간으로한다”를 “**기간으로 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잔임 기간으로”를 “**남은 임기로**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“년간 2회 (7월, 12월)”를 “**연간 2회(4월, 10월)**”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3분의2이상”을 각각 “**3분의2 이상**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**각 호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전통문화 선양

제10조의 제목 “(복지기금의 운용계획)”을 “(복지기금의 운영계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용계획”을 “운영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”를 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복지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

제10조제2항제4호 중 “운용상”을 “운영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”를 “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개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”을 “기금운영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금운용관”을 “기금운영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”를 “(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기금운용계획”을 “복지기금 운영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복지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연”을 “해당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운용상”을 “운영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,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중 “운용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</u>과 <u>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</u>하고 이를 <u>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</u>하는데 <u>필요한 사항을 규정</u>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충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<u>위한 기금을 설치</u>하고 <u>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</u>하는데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복지기금의 조성) ①<u>노인복지기금 (이하 “복지기금”이라 한다)</u>이라 함은 <u>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</u>하고 <u>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</u> <u>적립된 기금</u>을 말한다.</p> <p>②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충주시의 출연금</u></li> <li>2. <u>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와 노인단체 출연금</u></li> <li>3. <u>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</u> 또는 <u>기타 수입금</u></li> </ol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<u>노인복지기금 (이하 “복지기금”이라 한다)</u>이란 <u>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</u>하고 <u>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</u> <u>적립된 기금</u>을 말한다.</p> <p>②----- 각 호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시</u>-----</li> <li>2. <u>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</u>----- -----</li> <li>3. ----- <u>수익금</u>이나 <u>그 밖의</u> -----</li> </ol>

<신설>

제3조(복지기금의 운영관리) ① (생략)

②복지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.

③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

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복지기금은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③복지기금의 집행은 해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----- 10명 -----

③ -----

각 1인을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, 노인복지업무담

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,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
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
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· 2. (생략)
3. 기타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

-- 1명-----.

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,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,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-----  
----- 1명-----  
-----  
-----

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 
----- 운영관리-----  
--- 각 호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의 -----

사항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(생략)

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(7월, 12월)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.

③회의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

-----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-----  
----- 위원회의  
사무-----.

②-----  
----- 그 직  
무-----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-----  
-----  
----- 기간으로 한다.

②-----  
남은 임기로 ----.

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(4월, 10월)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
③----- 3분의2 이상-----

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분의2 이상-----

-----  
---

제9조(기금지급대상사업) 복지기  
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  
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제9조(기금지급대상사업) -----  
-----  
----- 각 호-----.

1. · 2. (생 략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전통문화선양

3. 전통문화 선양

4. ~ 10. (생 략)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복지기금의 운용계획) ①

제10조(복지기금의 운영계획) ①

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  
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
시장이 수립 한다.

----- 운영계획-----  
-----  
-----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  
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 
사항을 포함한다.

②-----  
--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--  
-----.

1. 복지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  
용방법

1. 복지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  
영방법

2. · 3. (생 략)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기타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  
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4. ----- 운영상 -----  
-----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 
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40일  
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 
다.

③----- 기금  
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회계관리) 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 장,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.

1. 복지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
2. 당해연도 복지기금의 사용계획

3. (생략)

4. 기타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

제11조(회계관리) ①-----

-----  
기금운영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기금운영관-----

제12조(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) ① -----

----- 복지기금 운영계획-----.

1. 복지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

2. 해당연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운영상 -----

②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

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  
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,  
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 
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  
가 정하는 이외는 충주시재무회  
계규칙 및 충주시보조금관리조  
례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 
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, 시  
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 
----- 운영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